

## 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하위법령 개정('25.8.7 시행)에 맞추어 「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」을 현행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(영업허가 등)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- 나.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,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화학물질관리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조 중 “제29조제7항에 따른”을 “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”으로, “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”를 “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”로, “영업허가 면제”를 “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(이하 “영업허가 등”이라 한다)의 면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유해화학물질”을 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변경허가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영업허가”를 “영업허가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영 제13조”를 “법 제33조 및 영 제13조”로 한다.  
제2장의 제목 “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”을 “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·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업변경허”를 “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신고증”을 “변경신고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규칙 제29조제6항”을 “규칙 제29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고증”을 “변경신고증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”를 “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

호 외의 부분 중 “규칙 제31조제7호”를 “규칙 제31조제9호”로 하고, 같은  
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2025년 1월 1일”을 “2026년 1월 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접수번호 :	<b>시범생산 계획서</b>
접수일자 : .	
. .	

1. 일반사항 및 공정개요

구 분		작성내용	
신고인	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	
	해당공장		
	해당공장 주소지		
	대표자 및 대표전화	담당자 및 연락처	
	영업허가구분		
시범생산 계획서 작성자		연락처	
①시범생산 관리책임자		연락처	
②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		연락처	

## 2. 시범사업 주요 내용

③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											
④시범사업 기간											
취급물질 정보	⑤유해화학물질명 또는 품명	CAS 번호	함량(%)	⑥물질상태	⑦폭발한 계 (상한/하한)	⑧인화점 (°C)	⑨독성 값	⑩증기압 (20°C, m mHg)	⑪취급량 (톤/일)	주요용 도	
취급시설 정보	⑫장치·설비의 종류	보유수량 (대)	운전용량 (m <sup>3</sup> )	⑬설계조건		⑭운전조건					
				온도(°C)	압력(MPa)	온도(°C)	압력(MPa)				
시범생산 제품 정보	제품명	⑮제조량(톤/일)				주요 용도					
⑯공정의 잠재위험		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 <input type="checkbox"/> 폭발 <input type="checkbox"/> 독성물질 누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폭발반응 <input type="checkbox"/> 중합반응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압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식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충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직접기재)					

### 3. 사고대비·대응 정보

구 분		작성내용
사고대 비· 대응정보	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	
	⑱ 방재장비 보유현황	
	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	

첨부서류 : 1. 공정개략도(BLOCK FLOW DIAGRAM) 및 열·물질수지, 또는 공정도면(PFD) 1부

2.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

3.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

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명

대표자명

(대표자 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- ① '시범생산 관리자'에는 해당 시범생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.
- ② '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'에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.
- ③ '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'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개요를 작성한다.
- ④ '시범사업기간'에는 시장 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생산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재한다. 다만 시범사업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
- ⑤ '유해화학물질명'에는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명을 기재하되, 가능한 한글로 작성하고 상품명 이 아닌 고유의 화학물질명을 기재한다. 다만, 영문과 병행하여 명기할 경우에는 영문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.
- ⑥ '물질상태'에는 25℃, 대기압에서의 기체,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.
- ⑦ '폭발한계'란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중의 농도의 범위로 하한 값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 값, 상한 값은 최대의 농도 값을 각각 작성한다. 다만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'자료 없음',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'해당없음'으로 기재한다.
- ⑧ '인화점'은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이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증기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화학물질 정보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.
- ⑨ '독성값'은 급성독성값(경구(LD<sub>50</sub>), 흡입(LC<sub>50</sub>)) 또는 우려농도기준(ERPG, AEGL, TWA) 값 등을 최소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한다.
- ⑩ '증기압'은 20℃에서 액체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의 압력을 작성하고, 20℃의 증기압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측정온도에서의 증기압을 온도와 함께 작성한다. 다만, 상온에서 가스인 물질(질소, 산소 등)은 '해당없음'으로 기재한다.

- ⑪ '취급량'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에서 일일 제조·사용량(kg/일 또는 톤/일) 또는 보관·저장량(kg 또는 톤) 중 큰 값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며,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로 작성한다.
- ⑫ '장치·설비의 종류'에는 압력용기, 반응기, 증류탑 등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및 설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⑬ '설계조건'에는 장치·설비의 설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.
- ⑭ '운전조건'에는 장치·설비의 실제 운전온도 및 압력을 기재한다.
- ⑮ '제조량'에는 시범생산을 통해서 제조되는 제품의 하루 평균 제조량 또는 제조 예정량을 기재한다.
- ⑯ '위험형태'에는 화재·폭발 및 유출·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해당공정이 가지는 주요 잠재위험을 표시한다.
- ⑰ '사고시 응급조치요령'에는 사고 초기 응급대응에 필요한 방재요령과 노출 환자 발생시의 조치요령을 간략하게 작성한다.
- ⑱ '방재장비 보유현황'은 해당 공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재장비의 종류와 보유수량, 개인보호구의 규격(형식)과 보유수량을 기재한다.
- ⑲ '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'에는 사고를 전파해야 할 사고대응 관련 기관(소방관서, 환경관서, 지방자치단체 등)의 전화번호와 사업장의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

##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

1. 일반사항

구 분		작성내용				
사업장 일반사항	사업장명			사업자 등록번호		
	①주소 (취급시설 소재지)					
	대표자	성명	담당자		성명	
		대표전화			연락처	
	②영업허가구분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관·저장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판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운반업	
	제출구분		<input type="checkbox"/>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<input type="checkbox"/>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			
변경개요	변경구분		<input type="checkbox"/>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변경 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외 평가정보 변경			
			( )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, ( ) 취급시설 위치 변경, ( ) 취급시설 신규 설치, ( )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, ( )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, ( ) 유해화학물질 함량·농도 또는 성상 변경			
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직접기재)			
③변경내용(요약)						
④변경검토서 작성자				⑤자격확인		

2.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⑥ 취급시설 증설			
⑦ 취급시설 위치 변경			
⑧ 취급시설 신규 설치			
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			
⑩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추가			
⑪ 유해화학물질 함량·농도 또는 성상 변경			
⑫ 기타			

3. 변경전·후의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

[변경 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]

변경 전(현행)										
⑬ 연번	⑭ 장치명	⑮ 유해화학물질명	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	함량(%)	⑰ 취급량	⑱ 설계용량(m <sup>3</sup> )	운전조건		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(m)	
							⑲ 압력(MPa)	⑳ 온도(℃)	독성	화재·폭발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
[변경 후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]

변경 후										
⑬ 연번	⑭ 장치명	⑮ 유해화학물질명	⑯ 운전조건에서 물질의 상태	함량(%)	⑰ 취급량	⑱ 설계용량(m <sup>3</sup> )	운전조건		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거리(m)	
							⑲ 압력(MPa)	⑳ 온도(℃)	독성	화재·폭발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
4. 변경 전후 총괄영향범위 및 개별설비 영향범위 정보

[총괄영향범위]

독성		화재·폭발	
총괄영향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대	총괄영향범위	<input type="checkbox"/>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대

[개별설비영향범위] (취급시설·물질 정보 이외 세부 입력 정보는 <붙임 1> 참조)

㉓ 연번	독성		화재·폭발	
1				
장치명	변경 전 장외거리 m	변경 후 장외거리 m	변경 전 장외거리 m	변경 후 장외거리 m
2				
장치명	변경 전 장외거리 m	변경 후 장외거리 m	변경 전 장외거리 m	변경 후 장외거리 m

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사업장명

대표자명

(대표자 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<붙임 1>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

⑬ 연번	장의 평가조건	변경전	변경후
1	풍속		
	대기안정도		
	대기온도		
	대기습도		
	누출지점		
	지표면의 굴곡상태		
	누출물질의 온도		
	누출량		
	누출공 크기		
	누출시간		
2	풍속		
	대기안정도		
	대기온도		
	대기습도		
	누출지점		
	지표면의 굴곡상태		
	누출물질의 온도		
	누출량		
	누출공 크기		
	누출시간		

[작성시 참고사항]

- ① '주소'란에는 변경이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한다.
- ② '영업허가구분'란에는 법27조의 구분에 따른 영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③ '변경내용'란에는 '동일한 사업장 내 황산 저장탱크(10톤 용량) 1기 신설' 과 같이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.
- ④ '변경검토서 작성자'란은 변경검토서를 실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한다.
- ⑤ '자격확인'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번호를 기재하고,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·훈련 계획에 따른 교육 이수 계획을 기재한다.
- ⑥ 취급시설의 증설 전과 증설 후의 용량(m<sup>3</sup>)을 각각 기재한다. 만약,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.
- ⑦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'취급시설의 중심부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'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단위를 기입한다.
- ⑧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용량(m<sup>3</sup>)을 각각 기재한다. 만약, 다수의 설비가 증설되는 경우 각 시설마다 용량을 기재한다.
- 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물질명을 기재한다
- ⑩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을 기재한다.
- ⑪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·농도, 성상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정보를 기재한다.
- ⑬ 연번은 취급물질 및 취급시설정보, 개별설비영향범위,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입력 내역 정보등 각각의 연번과 해당시설·물질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.
- ⑭ '장치명'란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설비의 명칭 또는 장치번호를 기재한다.
- ⑮ 유해화학물질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의 취급물질의 명칭을 기입한다.
- ⑯ '운전조건에서 물질상태'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운전조건에서의 물질의 상태를 기재한다.
- ⑰ '취급량'란에는 제조·사용시설의 경우 해당 제조·사용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등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, 사용, 제조할 수 있는 양(kg 또는 톤)을 단위와 함께 기재하고, 보관·저장시설의 경우 보관·저장시설에서 최대로 보관·저장할 수 있는 양(kg 또는 톤)을 단위와 함께 기재한다. 이 경우, 취급량은 유해화학물질별 및 취급시설별로 작성하되, 제조·사용량 또는 보관·저장량인지를 표시한다.
- ⑱ '설계용량'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설계상 최대용량을 기재한다.
- ⑲ '운전조건 압력'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압력을 기재한다.
- ⑳ '운전조건 온도'란에는 해당 설비 또는 장치의 실제 운전되는 온도를 기재한다.



한 사항

2.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4.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

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

제3조(영업변경허가·신고의 접수 등)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해야 한다.
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,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

-----

2. -----  
----- 영업허가  
등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법 제33조 및 영 제13조-----  
-----  
--

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·신고 및 영업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

제3조(영업변경허가·신고의 접수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 
변경허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변경신고증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규  
칙 제29조제7항-----  
-----

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)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“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”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」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“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(생략)
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
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변경  
신고증 -----.

제6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) <삭 제>

② 규칙 제31조제9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- <삭 제>

